2018년 정보보호 해커톤 (2018 Security Hackathon) 참가 안내서

2018. 4.



가. 해커톤 개요

□ 목적

o 학생,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**정보보호 관련** 솔루션 개발 기회를 제공하여 정보보호 분야의 다양한 **우수 신규 아이디어 발굴**

□ 행사 개요

- o (주제) 블록체인과 사물인터넷 기술을 융합한 보안 솔루션 구현 및 신규 아이디어 도출
- o (주최) 과학기술정보통신부
- o (주관) 한국인터넷진흥원(이하 KISA), 삼성전자, SK텔레콤(이하 SKT)

□ 시상 및 혜택

o KISA, 삼성전자, SKT이 제시한 문제를 창의·혁신적인 대안 및 솔루션의 구현을 통해 가장 우수하게 해결한 **5개팀을 선정**하여 **상장·상금 수여**

< 시상 규모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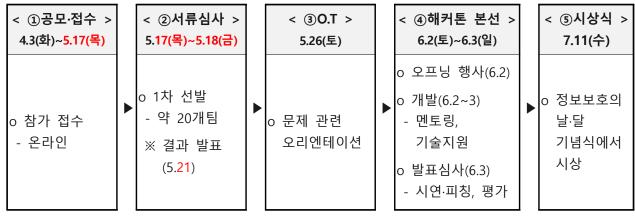
구분	훈격	시상금	개수	비고
대상	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	1,500만원	1개	
최우수상	한국인터넷진흥원장상	700만원	2개	학생팀* 1개
우수상	삼성전자, SKT	500만원	2개	학생팀* 1개

^{*} 학생으로만 구성된 팀

o 수상팀이 KISA가 운영하는 'K-Global 시큐리티 스타트업(창업·사업화 지원 분야)'에 지원 시 가점 부여

나. 추진 내용

□ 추진 일정 및 내용



- ※ 일정 및 내용은 주최·주관기관의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
- ① (공모·접수) 해커톤 참가 희망자는 팀을 구성하여 응모지원서 및 개발기획서를 작성하여 이메일(kgss@kisa.or.kr)로 제출
- ② (서류심사) KISA, 삼성전자, SKT는 해커톤 참가 희망자가 제출한 개발기획서를 심사*하여 해커톤 본선의 참가팀 선발
 - * 창의성, 기술성, 사업성, 구현 가능성 등을 평가
 - ※ KISA는 서류심사 결과를 해커톤 본선 참가팀에 이메일 등으로 개별 안내
 - ※ 우수 참가팀이 많거나 자격에 부합하는 참가팀이 없을 경우, 선발 수 변경 가능
- ③ (O.T) 삼성전자, SKT 보안·기술 전문가가 해커톤 본선 참가팀을 대상으로 해커톤 문제와 관련된 기술 개요 소개 및 질의·응답 진행 ※ 삼성전자: 사물인터넷(ARTIK) 관련 / SKT: 블록체인 관련
- ④ (해커톤 본선) 해커톤 본선 참가팀은 무박 2일간 과제 개발을 마무리하고 구현 솔루션에 대해 시연·피칭*
 - * KISA, 삼성전자, SKT의 보안·개발·사업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창의성, 기술성, 사업성, 완성도 등을 평가하여 최종 5개 우수팀 선발
 - ※ 삼성전자, SKT는 과제 수행 관련 기술적 애로사항 등을 멘토링(예정)
- ⑤ (시상식) 7월 개최 예정인 정보보호의 날·달 기념식에서 우수팀에 대한 시상 및 부스 시연을 진행
 - ※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다. 공모 개요

- □ 공모 일정
 - o (공고·접수 기간) 2018.4.3.(화) ~ **5.17.(목), 17:00** 限
- □ 참가 자격 및 팀구성
 - o (참가 자격) 정보보호 분야의 우수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구현 능력을 보유한 학생(고등·대학, 대학원생), 일반인(재직자 등) 등
 - ※학생, 일반인 혼합팀 참가 가능
 - o (팀 구성) 팀은 1인 이상 4인 이하로 구성 가능
- □ 선발 규모
 - o (본선 참가팀 선발) 서류심사를 통해 20개팀 선발
 - ※ 우수 참가팀이 많거나 자격에 부합하는 참가팀이 없을 경우, 선발 수 변경 가능
 - 본선 참가팀은 오리엔테이션에 최소 1인 이상 참여 필수
 - ※ 판교 정보보호클러스터에서 행사 추진 (예정, 별도 안내)
 - o (최종 우수팀 선발)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5개팀 선발
 - 본선 참가팀은 본선의 오프닝 행사, 개발, 발표심사 및 폐회식 등 오프라인 행사에 최소 팀인원의 과반 이상이 참여 필수
 - ※ 판교 정보보호클러스터에서 행사 추진 (예정, 별도 안내)

□ 접수 방법

- o (지원서류 다운로드) KISA 홈페이지 내 '공지사항'* 또는 온오프믹스**를 확인하여 응모지원서, 개발기획서 등을 다운로드
 - * https://www.kisa.or.kr/notice/notice_View.jsp?mode=view&p_No=4&b_No=4&d_No=2103
- ** https://onoffmix.com/event/136015
- o (지원서류 작성 및 제출) 다운로드한 응모지원서 및 개발기획서를 작성하여 이메일(kgss@kisa.or.kr)로 제출 또는 온오프믹스에 신청 및 업로드
 - ※ 접수는 지정된 공모 시간 내에 도착한 건에 한하여 인정(방문·우편접수 불가)
 - ※ 응모지원서의 '참가서약서' 및 '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'는 출력 및 수기 작성하여 자필 서명 후 스캔본을 제출 (팀 내 모든 참가자 제출 필요)

라. 유의사항

- o 여기서 응모자는 응모한 팀, 팀 전원 또는 팀 內 개별 팀원 등을 포함함
- o 응모자가 제안한 아이디어 등은 타사 또는 타기관에 제안이력이 없어야 하며, 응모자가 직접 창안하거나 전적인 권리를 갖고 있어야 함
- o 응모자가 타인의 아이디어, 기술의 모방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민·형사상의 책임은 응모자 본인에게 있음
- o 응모자가 해커톤에 제출한 공모작의 저작권, 기타 지적재산권 등과 관련한 사항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모든 민·형사상의 책임은 응모자 본인에게 있음
- o 응모자는 재직·소속 중인 기업·기관 등의 아이디어·솔루션 등으로 해커톤에 절대 응모가 불가하며, 이를 어기고 해커톤에 응모·참가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·형사상의 책임은 응모자 본인에게 있음
- o 응모자는 사업 중이거나 사업화를 위해 준비 중인 아이디어·솔루션 등으로 해커톤에 절대 응모가 불가하며, 이를 어기고 해커톤에 응모· 참가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민·형사상 문제는 응모자에게 책임이 있음
- ※ 본 해커톤은 아이디어의 단순 발굴 뿐만 아니라, 향후 주관기관과 공동 개발 및 사업화 등을 지향
- o 응모자는 해커톤에 참가를 위해 아이디어 등이 포함된 응모지원서, 개발기획서, 발표심사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함
- o 참가팀 중 수상팀의 경우 필요 시 응모자 동의를 얻은 후 공개석상에서 아이디어의 발표 요청 가능
- o 해커톤의 주최·주관기관의 소속원도 해커톤에 참가 가능하나, 해커톤과 직·간접적으로 연관*된 부서에서 근무하지 않은지 2년 이상 되었을 경우에만 참가 가능
 - * 해커톤 기획, 지원, 문제출제 등
- ※ 응모자가 인사 관련 기록 등 증거 서류 제출 등으로 직접 별도 입증해야 함

- o 응모자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경우 해당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요구사항 등을 확인·준수하여야 하며,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민·형사상의 책임은 응모자 본인에게 있음
- o 이 외에 응모자가 해커톤에 제출한 아이디어 등과 관련하여 응모자와 주최·주관기관의 권리와 의무관계, 아이디어의 사용 용도 및 사용권 등은 본 참가안내서 붙임의 약관을 따름

마. 안내 및 문의처

○ KISA IoT융합보안팀 임석재 선임연구원 (02-405-5566, kgss@kisa.or.kr)

〈「2018년 정보보호 해커톤」공모전 공고 약관 >

■ 갑:「2018년 정보보호 해커톤」아이디어 응모자

■ 을: 「2018년 정보보호 해커톤」 주관기관

제1조 [용어의 정의]

- ① 본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- 1. '아이디어'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, 이를 보호할 수 있는 권리가 창작자에게 당연히 발생하거나 별도의 절차에 의해 창작자가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.
 - 2. '출원'이라 함은 특허, 실용신안등록, 디자인등록 등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특허, 실용신안등록, 디자인등록 등을 받기 위해 소 정의 원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말하며, 「특허법」상 특허출원, 「실용신안법」상 실용신안등록출원, 「디자인보호법」상 디자인출원 등을 포함한다.
 - 3. '공모전'이라 함은 제출된 아이디어 중 우수한 아이디어를 선발하여 시상 등 차별적인 지원을 하는 대회, 전시회 등을 의미한다.
 - 4. '주관기관'이라 함은 공모전을 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, 공모전 운영담당자, 아이디어 심사담당자, 공모전 운영을 위한 인프라시스템 담당자 등 공모전 운영에 직·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기관·단체·개인 등 모두를 포함한다.
 - 5. '응모자'라 함은 공모전에 아이디어를 제출하며 응모한 개인 및 단체를 의미한다. 이 때, 단체는 법인도 포함한다.
- ②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본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, 그 외에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라 해석한다.

제2조 [약관의 목적] 본 약관은 갑이 을이 주최하는 「2018년 정보보호

해커톤」 공모전에 참여함에 있어 갑의 아이디어와 관련하여 갑과을 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 [아이디어의 귀속] 응모된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는 갑에게 있다.

제4조 [갑의 의무]

- ① 갑은 공모전에 응모한 아이디어가 타인의 아이디어를 고의로 도용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된 경우에 수상 이후에도 수상은 취소되고 갑은 상장 및 상금을 반환해야 한다.
- ② 갑은 제1항의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 을과 양도 또는 사용권 허여 계약을 한 경우, 그와 관련된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.
- 제5조 [을의 의무] 을은 공모전에 응모한 아이디어에 관하여 발생하는 권리가 별도의 절차를 통해서 취득 가능한 경우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권리 획득이 가능한 시기에 관한 사항을 갑에게 고지해야 한다.
 - 1. 특허·실용신안의 경우 공개일로부터 1년 이내 출원
 - 2. 디자인의 경우 공개일로부터 6월 이내 출원
- 제6조 [응모된 아이디어의 사용 용도 제한]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아이디어를 공모전 운영 및 선정·평가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.
- 제7조 [응모된 아이디어의 외부 제공] 을은 공모전에 응모된 갑의 아이디어에 관한 내용을 갑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. 다만, 다음의 각호의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1. 을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.
 - 2. 제6조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갑의 아이디어에 관한 내용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
 - (이 경우에는 당해 제3자와 별도의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해야 한다.)

제8조 [자료의 반환 및 폐기]

- ① 갑은 공모전의 결과 발표일 이전에 아이디어의 응모 철회를 을에 요청할 수 있으며, 을은 응모된 아이디어에 관련된 자료 (이하 '자료'라 한다)를 폐기한다.
- ② 갑은 공모전의 결과 발표일 이후 1년 이내에 자료의 반환을 을에 요청할 수 있으며, 을은 제출된 자료를 반환하여야 한다. 이때 반환 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그 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.
- ③ 2항에서 반환되는 자료가 물리적 형체를 지니지 아니한 경우, 을은 제출된 자료를 폐기하는 것으로 자료의 반환을 갈음할 수 있다.
- ④ 을은 공모전의 결과 발표일로부터 1년이 도과하여도 제2항에 따른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즉시 갑의 자료를 폐기해야 한다. 다만, 본 공모전에서 수상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제9조 [수상 아이디어에 대한 우선협상권] 을이 수상 아이디어에 대한 상장과 상금을 갑에 지급하는 경우, 을은 상금 지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갑이 보유하고 있는 수상 아이디어의 권리에 대한 사용권 허락 또는 양도에 대하여 우선협상권을 가진다.
- 제10조 [사용권 허락] 을이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의 사용권을 허여 받고자 하는 경우, 을은 갑과 별도의 사용권 계약을 체결하여 대가, 범위, 기간 등 사용권 허여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 다만, 그 아이디어가 수상된 것이며 사용범위가 공모전 홍보, 당선작 전시 등 공모전 개최 목적이나 일반적인거래 관행에 비추어 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제11조 [양도] 을이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양수하고자 하는 경우, 을은 갑과 별도의 양도계약을 체결해야 하며, 대가, 대가의 지급 방법 등 양도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제12조 [분쟁의 해결]

- ① 본 약관과 관련하여 혹은 쌍방의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갑과 을은 이를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토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② 본 약관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또는 갑과 을의 개별 합의를 거쳐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해결할 수 있다.
- 제13조 [합의사항 이외의 경우]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의한 후에 결정한다. 단,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.